



2017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

대출내용

- 대출금액: 1세대당 최대 5백만원(단, 신용회복중인 세대(성실상환)는 최대 3백만원)
- 대출금리: 무이자
- 대출용도: 임차보증금
- 대출조건: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함
※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**상환 조정된 임차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**

신규 또는 재계약 기한	1차	2017. 1. 1. ~ 6. 30.	잔금지급일은 2017. 1. 1. ~ 7. 31.
	2차	2017. 4. 1. ~ 9. 29.	잔금지급일은 2017. 4. 1. ~ 10. 31.
	3차	2017. 7. 1. ~ 12. 29.	잔금지급일은 2017. 7. 1. ~ 2018. 1. 31.

- 상환방법 및 금액: 거치기간 없이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가장 60개월 분할 상환

- ▶ 300만원 이하 대출: 매월 5만원 분할상환
- ▶ 300만원 초과 ~ 350만원 이하 대출: 매월 6만원 분할상환
- ▶ 350만원 초과 ~ 400만원 이하 대출: 매월 7만원 분할상환
- ▶ 400만원 초과 ~ 450만원 이하 대출: 매월 8만원 분할상환
- ▶ 450만원 초과 ~ 500만원 이하 대출: 매월 9만원 분할상환

-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,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

신청대상

-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가장
 - 1) 만 18세(취학 시 만 22세) 이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
 - 2) 임차보증금 보유기준:
 - 대도시(특별시, 광역시의 "구", 도농복합 "군") 5,400만원 이하
 - 중소도시(도의 "시"와 특별자치시·도) 3,400만원 이하
 - 농어촌(도의 "군") 2,900만원 이하

가구원 수	소득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)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 합
2인	2,026,000	62,599	45,657	63,330
3인	2,621,000	80,756	80,407	81,698
4인	3,217,000	99,426	107,314	100,677

※ 가구원수: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
만 18세 이하: 1999.1.1. 이후 출생자(취학시: 1995.1.1. 이후 출생자)

대출 불가 세대

-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될 경우 대출 불가
- 대출불가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, 향후 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
 - ▶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
 - ▶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 - ▶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(민법상 대출 불가)
 - ▶ 가족(직계비속, 형제자매)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
 - ▶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
 - ▶ 신용관리 대상자(개인회생, 파산)

- ※ 단,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,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
 - ① 신용회복위원회(타기관 채무조정 이용자 제외)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(개인별 신청일자 기준) 성실상환중인 세대
 -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